

(재)예천문화관광재단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예천문화관광재단은 지역정체성을 바탕으로 특화된 예천문화관광정책의 개발 추진과 곤충엑스포 등 지역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예천군의 이미지와 브랜드 효과를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①이 법인은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

②영문은 Yecheon Cultural Tourism Foundation(약칭 : YCTF)로 표기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예천군청내)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관광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
2. 지역문화관광 사업의 추진 및 자문
3. 문화관광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4. 국내·외 문화관광 교류 및 활동지원
5. 문화관광 및 지역 축제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6. 문화관광 관련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7. 곤충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등 관련 업무
8. 그 밖의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공여이익의 수혜자) 재단법인은 사업의 수행으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상 15명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명

제8조(임원의 선임) ①이사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로 하고, 당연직 이외의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1. 예천군수
2. 예천문화원장
3.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4.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천지회장
5.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6. 예천군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

②재단법인의 이사장은 예천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감사 2인중 1인은 이사가 아닌 자로서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예천군청 재무과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제9조(임원의 선임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1항 규정에 따라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소속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②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선출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재단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법인을 대표하고 재단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장의 사고 또는 결위 시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2. 재단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이사장 이외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보수제한) 재단법인의 임원(상근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재단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단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단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
5. 재단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5조(회의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1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이사는 그 의결권을 의장, 다른 이사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개의정족수에 당해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하여야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재단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장 기구 등

제18조(기구의 설치) ①재단법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사무국) ①재단법인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책 및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사무국의 조직운영, 분장사무, 직원의 임명과 복무, 보수 및 수당의

지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재산) ①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되,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출자방법에 의한 출연금)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일반단체 또는 일반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부동산 또는 동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 ③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 ④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원) 재단법인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과 다음의 재산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일반단체 또는 일반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3.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수익금
4. 기본재산으로 부터의 과실 수입금
5. 그 밖에 수입금

제22조(재산의 관리) ①재단법인의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 및 자금의 차입(해당년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①재단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위원회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준비를 위한 용역 및 사업발주에 대한 계약 방법은 법령 등의 취지에 벗어나 지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규칙에 범위를 정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법인은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결산) 재단법인은 매 회계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폐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잉여금의 처리) 재단법인의 각 회계 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 등으로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27조(계속비) 재단법인은 매 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28조(회계감사) 감사는 위원회의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보수, 수당 및 여비 등) 재단법인의 임원과 각종위원, 사무국 직원 등의 실비보상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재단법인의 재산은 재단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재단법인의 설립자

2. 재단법인의 임원

3. 재단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재단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6장 보칙

제31조(공고) 재단법인의 법령, 정관,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의 의결에 의하여 대내·외적으로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지나 지역신문 또는 위원회 및 예천군 홈페이지, 예천군보 등에 의한다.

제31조의 1(공시의무) 재단법인은 결산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2조(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3조(해산) 재단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이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예천군에 귀속한다.

제35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규칙) 이 정관은 법원에 재단법인의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초 임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당시의 임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가 기명날인 한다.

발기인 대표 성 명 : 이 현 준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63

발 기 인 성 명 : 김 영 규
주 소 :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94

발 기 인 성 명 : 정 상 진
주 소 : 예천군 호명면 본포리 233-3

발 기 인 성 명 : 김 예 희
주 소 : 구미시 고아읍 원효리 199-1

발 기 인 성 명 : 안 홍 기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 723-3

발 기 인 성 명 : 김 종 배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석정리 122

발 기 인 성 명 : 정 희 융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42-1

[별표1]

법인설립 당시의 재산 목록

재산구분	재산명	수량	평 가 액	출연자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1	50,000,000원	이 현 준 (예천군수)	법인설립 예 치 금
보통재산	현 금	1	200,000,000원	이 현 준 (예천군수)	
	이	하	여 백		
합 계		1	250,000,000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1년 4월 22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산(현금)	1	50,000,000원	법인설립예치금 (기확보된 예산)
합 계	1	50,000,000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 목록

재 산 명	종 별	수량	단 가	평 가 액	비고
동산(현금)	설립예치금	1	50,000,000원	50,000,000원	
합 계		1	50,000,000원	50,000,000원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량	평 가 액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 고
기 본 재 산	현금(예치액)	1	50,000,000원		郡예산지원	
	주 식					
	사 채					
	건 물					
	대지(건물)					
	전					
	답					
	대 지					
	임 야					
	기업체					
	기 타					
	계	1	50,000,000원			
보 통 재 산	운영비(현금)	1	200,000,000원		郡예산지원	
	계		200,000,000원			
합 계		1	250,000,000원		郡예산확보	

기 본 재 산 목 록

종 별 (용도별)	수 량 (m ²)	평 가 액	비 고
郡 출연금	1	50,000,000원	- 재단법인 출연금 - 법인등기완료시 통장예치
계	1	50,000,000원	

※ 기업체, 주식, 사채, 수익용토지, 건물은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을
비고란에 년도별로 기재

보 통 재 산 목 록

종 별 (용도별)	수 량 (m ²)	평 가 액	비 고
운 영 비	1	200,000,000원	예치금(기 확보된 예산)
계	1	200,000,000원	

※ 기업체, 주식, 사채, 수익용토지, 건물은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을
비고란에 년도별로 기재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1년 4월 22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산(현금)	1	50,000,000원	법인설립예치금 (2011본예산확보)
합 계	1	50,000,000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 목록

재 산 명	종 별	수량	단 가	평 가 액	비고
동산(현금)	설립예치금	1	50,000,000원	50,000,000원	
합 계		1	50,000,000원	50,000,000원	

[별표2]

법인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비 고
이사장	이 현 준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63	4	
”	김 종 배	예천군 예천읍 석정리 122	4	
이 사	김 예 희	구미시 고아읍 원효리 199-1	4	
	안 홍 기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 723-3	4	
	정 희 융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42-1	4	
	김 주 일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573-1	4	
	권 용 정	대구시 북구 산격동 505	4	
	김 종 기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71-5	4	
	김 선 도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105-414	4	
감 사	엄 종 호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12-2	2	
	황 영 길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57-9	2	